

프로그램수신료와 방송의 독립성¹⁾

I. 사실관계

오스트리아방송국(Österreichischer Rundfunk, ORF)은 공법상의 재단으로 연방 내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공급할 의무를 진다. ORF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권리는 오스트리아연방방송국법²⁾(이하 ‘방송국법’) 제31조 제1항³⁾에 따라 지속적인 프로그램수신료(라디오수신료, 텔레비전수신료) 납부와 결부되어 있다. 동조 제10항⁴⁾에 따르면 수신료는 방송의 빈도나 품질,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며, 방송수신자가 방송국법 제3조 제1항⁵⁾에 따라 ORF의 프로그램을 지상파(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지상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면 특히 그러하다. ORF의 공영방송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방송방식(지상파, 케이블, 위성)을 통해 수신 가능하며 이 밖에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생(스트리밍)될 수 있다. 그런데 ORF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소비하는 경우에는 행정대법원의

1)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2022. 6. 30. 결정, G 226/2021-12.

2) Bundesgesetz über den Österreichischen Rundfunk, ORF-G, BGBl. I 247/2021.

3) **[오스트리아연방방송국법 제31조 제1항]**

누구나 지속적인 프로그램수신료(라디오수신료, 텔레비전수신료)를 납부하는 대가로 오스트리아방송국의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권한이 있다. 프로그램수신료의 금액은 사무총장이 신청하면 재단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사무총장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수신료의 재확정을 신청해야 하지만 마지막 신청 이후 5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4) **[오스트리아연방방송국법 제31조 제10항]**

프로그램수신료는 방송의 빈도와 품질 또는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며, 특히 방송참여자(방송수수료법 제2조 제1항)가 소재지에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상파(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지상파)를 통해 오스트리아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프로그램수신료 납부 의무의 시작과 종결 시점 및 면제에 관해서는 방송수수료에 적용되는 연방법 규정에 따른다.

5) **[오스트리아연방방송국법 제3조 제1항]**

오스트리아방송국은 모든 지사와의 협력하에

1.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수신 가능한 3개의 라디오 프로그램과 연방지역 내에서 수신 가능한 9개의 라디오 프로그램

2.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수신 가능한 2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오스트리아방송국은 기술의 발전과 경영상 수인되는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 및 수신료의 질과 관련하여 방송수신기(라디오와 텔레비전) 운영의 권한이 있는 연방지역 내 주민들이 균일하고 지속적으로 연방 전역에서 수신 가능한 1개의 라디오 프로그램과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수신 가능한 2개의 라디오 프로그램 및 2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 결정(Ro 2015/15/0015)에 따르면 프로그램수신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방송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방송기술(지상파나 케이블 또는 위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만 방송수수료법⁶⁾ 제1조 제1항⁷⁾상의 방송수신설비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ORF 프로그램을 스트리밍하는 사용자들은 방송수수료법 제2조⁸⁾상의 방송참여자⁹⁾로 정의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방송국법 제31조 제10항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ORF는 방송국법 제31조 제10항에서 문제된 문언을 통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방송의 자유(유럽인권협약 제10조⁹⁾,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는 연방헌법¹⁰⁾(이하 ‘연방방송헌법’) 제1조¹¹⁾, 법 앞에서의 평등(연방헌법 제7조¹²⁾) 및

6)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inhebung von Rundfunkgebühren (Rundfunkgebührengesetz – RGG), BGBl. I Nr. 159/1999.

7) **[방송수수료법 제1조 제1항]**

이 연방법상 방송수신설비는 연방방송헌법 제1조 제1항상의 공연을 직접 시각적·청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적 기기를 의미한다.

8) **[방송수수료법 제2조]**

(1) 제1조 제1항상의 방송수신설비를 건물에서 운영하는 사람(방송참여자)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방송수신설비의 운영 대기는 해당 설비의 운영과 동일하게 간주해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제1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1. 방송참여자가 면제(제3조 제5항)를 받은 경우 또는
2. 소재지에서 이미 제3조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소재지는 방송수신설비가 운영되고 있는 주거지 또는 기타 단일한 사용목적의 가진 공간을 의미한다.

9) **[유럽인권협약 제10조]**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공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항이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

10) Bundesverfassungsgesetz vom 10. Juli 1974 über die Sicherung der Unabhängigkeit des Rundfunks StF: BGBl. Nr. 396/1974 (NR: GP XIII AB 1265 S. 111. BR: S. 334.)

11) **[연방방송헌법 제1조]**

(1) 방송이란 연결선 없이 전기적 진동을 사용하거나 물리전도체의 횡축 또는 이를 매개로 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공연을 말, 소리 및 이미지로 전파하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를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방송과 그 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으로 확정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연방법은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의견의 다양성 고려, 프로그램의 균형 및 제1항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된 개인과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방송은 공공의 과제이다.

12) **[연방헌법 제7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출신, 성별, 신분, 계급 및 신앙에 따른 특권은 인정되지 않

재산의 불가침(유럽인권협약 추가의정서¹³⁾ 제1조 제1호¹⁴⁾, 국가기본법¹⁵⁾ 제5조¹⁶⁾)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다.

II. 주문

1. 오스트리아연방방송국법 제31조 제10항의 ‘특히 방송참여자(방송수수료법 제2조 제1항)가 소재지에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상파(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지상파)를 통해 오스트리아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프로그램수신료 납부 의무의 시작과 종결 시점 및 면제에 관해서는 방송수수료에 적용되는 연방법 규정에 따른다.’라는 문언은 위헌으로 폐지한다.

2. 폐지의 효력은 2023. 12. 31.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3. 이전의 법률 규정은 다시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4. 연방총리는 이 판결을 연방 법률관보 I 에 지체 없이 게재할 의무를 진다.

III. 관련 규정과 쟁점

1. 관련 규정

는다. 누구도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화국(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생략...)

13) Zusatzprotokoll zur Konven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ZPEMRK

14) [유럽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조 제1항]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재산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공공의 이익이 요구하고, 법률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규정된 조건하 외에는 누구도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15) StGG - Staatsgrundgesetz über die allgemeinen Rechte der Staatsbürger

16) [국가기본법 제5조]

재산은 불가침이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재산권의 박탈은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와 방식으로만 행해질 수 있다.

연방방송헌법

제1조

(1) 방송이란 연결선 없이 전기적 진동을 사용하거나 물리전도체의 횡축 또는 이를 매개로 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공연을 말, 소리 및 이미지로 전파하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 장비를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방송과 그 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으로 확정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연방법은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의견의 다양성 고려, 프로그램의 균형 및 제1항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된 개인과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방송은 공공의 과제이다.

오스트리아연방방송국법

제31조

(1) 누구나 지속적인 프로그램수신료(라디오수신료, 텔레비전수신료)를 납부하는 대가로 오스트리아방송국의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권한이 있다. 프로그램수신료의 금액은 사무총장이 신청하면 재단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사무총장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수신료의 재확정을 신청해야 하지만 마지막 신청 이후 5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프로그램수신료의 금액은 경제적이며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을 기반으로 공법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체적인 경제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프로그램수신료의 금액은 프로그램 비용 결정으로부터 5년의 기간(자금 조달기간) 동안 프로그램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의 예상 수를 고려할 때 공공서비스의 예상 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프로그램수신료의 계산 기준이 되는 예상 발전에 대한 가정은 이유 있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제3항~제9항 생략)

(10) 프로그램수신료는 방송의 빈도와 품질 또는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며, 특히 방송참여자(방송수수료법 제2조 제1항)가 소재지에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상파(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지상파)를 통해 오스트리아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프로그램수신료 납부 의무의 시작과 종결 시점 및 면제에 관해서는 방송수수료에 적용되는 연방법 규정에 따른다.

(제11항~제16항 생략)

(17) 프로그램수신료는 방송수수료와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징수해야 한다; 다른 방식에서의 납부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다.

(제17a항 생략)

(18) 연체된 프로그램수신료는 방송수수료 징수를 부여 받은 법인이 방송수수료 체납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오스트리아방송국을 위해 회수할 수 있다.

(제19항 생략)

방송수수료법

제1조

(1) 이 연방법상 방송수신설비는 연방방송헌법 제1조 제1항상의 공연을 직접 시각적·청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적 기기를 의미한다.

(제2항 생략)

제2조

(1) 제1조 제1항상의 방송수신설비를 건물에서 운영하는 사람(방송참여자)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방송수신설비의 운영 대기는 해

당 설비의 운영과 동일하게 간주해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제1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1. 방송참여자가 면제(제3조 제5항)를 받은 경우 또는
2. 소재지에서 이미 제3조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소재지는 방송수신설비가 운영되고 있는 주거지 또는 기타 단일한 사용목적의 가진 공간을 의미한다.

(제3항~제5항 생략)

2. 쟁점

ORF의 프로그램을 전통적 의미의 지상파방송수신설비를 통해 제공받지 않고 스트리밍만을 통해 이용하는 사람에게 프로그램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다.

IV. 판단

1. 공영방송사로서 ORF의 자금조달은 연방방송헌법에 따라 연방입법자의 관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오스트리아연방방송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는 유럽연합법, 특히 보조금과 관련한 법적 요건 및 연방방송헌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해야 하는 의무를 고려하여 공영방송의 민주적·문화적 과제를 오스트리아연방방송국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입법자는 연방방송헌법 제1조 제2항과 제3항에 기초하여 형성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기능 및 자금 조달책임에 대해 혼합재정 방식을 선택하였다. ORF는 공법상의 과제를 수행하며 한편으로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자금 조달수단으로서 법으로 규정된 프로그램수신료를 받으며, 다른 한편으로 기업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은 경영상 수익, 특히 광고 수익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수신료는 특히 방송국법 제31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수신료의 납부 의무 대상과 그 금액에 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수신료의 금액은 유럽연합의 지침과 총체적 경제 발전을 고려하여 공법상의 과제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경제적인 행정의 이행될 수 있도록 확정해야 한다.

프로그램수신료 납부 의무를 부과 받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ORF의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방송국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조 제10항에서는 프로그램수신료 납부 의무를 부과 받는 대상을 방송수수료법 제2조 제1항상의 '방송참여자'에게도 확장하고 있다. 즉, 소재지에서 ORF의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사람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입법자는 방송국법 제31조 제10항에서 누가 ORF에 프로그램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방송수수료법에 따라 방송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과 연결하여 규정하고 있다. 방송국법 제31조 제17항과 제18항에서도 프로그램수신료 징수를 방송수수료법상의 방송수수료 납부와 결부하고 있다.

방송수수료 납부 의무는 방송수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1조 제1항상의 방송수신설비를 운영하거나 운영 대기하고 있는 사람(방송수수료법 제2조 제1항상의 방송참여자)에게 부과된다. 행정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방송수수료법상의 '방송수신설비'는 '방송기술'(지상파 방식, 케이블, 위성)을 사용하는 기기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송기술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는 컴퓨터(가령 TV 카드나 라디오 카드, DVB-T 모듈)는 방송수신기기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방송기술 없이 인터넷 연결만 가능한 컴퓨터는 방송수신기기가 아니다(VwGH 30.6.2015, Ro 2015/15/0015). 방송수수료법에 관한 이 행정대법원 판례는 ORF의 프로그램수신료 납부 의무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낸다. 방송국법 제31조 제10항 제1문

후단에 따르면 방송수수료법 제2조 제1항상의 ‘방송참여자’도 소재지에서 ORF의 프로그램을 지상파(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방식)를 통해 제공받는다면 프로그램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방송수수료법 제2조 제1항은 ORF의 방송프로그램을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수신받는 사람도 방송수수료 납부 의무가 있는 방송참여자로 규정하지만 ORF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스트리밍만 하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방송국법 제31조 제10항 제2문에서는 프로그램수신료 납부 의무의 시작과 종결 시점 및 면제에 관해서는 방송수수료에 적용되는 연방법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동조 제17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수신료를 방송수수료와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수신료 납부 의무는 방송국법 제31조 제10항과 동조 제17항, 방송수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방송수신설비를 통해 ORF의 방송 프로그램을 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으로 수신 가능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입법자가 앞서 언급한 규정에서 방송수수료와 (방송국법 제31조와 결부하여) ORF 프로그램수신료의 납부 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에 의하면 인터넷이 가능한 수신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상파나 케이블 또는 위성을 통한 ORF 방송 프로그램 수신이 불가능한 사람은 방송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수신료를 낼 의무도 없게 된다. 이는 인터넷이 가능한 수신기기를 통해 ORF 프로그램을 듣거나 볼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2. 청구인인 ORF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수신료 납부 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소위 ‘스트리밍-공백’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ORF 프로그램을 지상파나 케이블 또는 위성을 통해 사용하는 사람과 동일한 ORF의 프로그램을 듣고 볼 수 있는 (스트리밍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ORF는 이 점이 특히 자신의 법적 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설계라고 간주한다. 프로그램수신료 납부 대상의 범위를 부적절하게 설정

하였고, 방송참여자를 프로그램수신료 납부 의무자로 규정하는 기술의존적 규정은 기술중립적이며 발전에 대해 개방된 태도를 보이는 연방방송헌법 제1조 제1항의 방송의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스트리밍’은 이제 지상파나 케이블 또는 위성을 통한 전파방식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전파방식이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 규정은 연방방송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영방송에 대한 재정보장에도 위배된다.

연방방송헌법과 유럽인권협약 제10조는 방송규정 설계를 위한 민주적이고 문화적 관점에서의 입법자의 기능적 책임을 조직한다. 이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서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및 연방방송헌법에서의 제도적 전제에 기초하며(VfSlg. 12.822/1991 참조), 방송을 통한 공개적 담론의 자유를 총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연방방송헌법 제1조 제1항상의 방송은 기술적(연결선 없이 전기적 진동을 사용하거나 물리전도체의 횡축 또는 이를 매개로 하는) 구성요소와 내용적·저널리즘적(모든 종류의 공연을 말, 소리 및 이미지로 전파)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 전자는 인쇄 매체가 아닌 전자적 매체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에서 기술을 특징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개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연방방송헌법 제1조 제1항상의 방송 규정에 연결되는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서의 보장이 변화하는 기술 세계에서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널리즘적 구성요소는 특히 방송의 매스미디어로서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이는 특히 단어, 소리 및 이미지 조합의 효과와 프로그램 설계 및 프로그램에서 표현되는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대중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영향에서 분명해진다. 연방방송헌법 제1조 제1항은 동조 제2항과 제3항의 기능 및 개발 보장과 상호작용한다(Berka, Das BVG-Rundfunk: Rundfunkrechtliches Leitprinzip für einen modernen Rundfunk oder obsoletes Verfassungsrecht?, FS Öhlinger, 2004, 584 [589];

Wiederin, Die Rundfunkdefinition des BVG-Rundfunk: Versuch einer Rehabilitierung, MR 2021, 215 [221] 참조).

3. 본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영방송과 관련된 방송헌법의 요건, 특히 자금 조달 및 독립성(국가 및 사적 영향력과 종속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연방방송 헌법 제1조 제1항의 방송개념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원칙은 연방방송헌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능적 책임이 방송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정의된 방송규정에서 공영방송은 연방방송헌법 및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따라 기능적으로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연방방송헌법의 자금조달 보장이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과 연결된다. 이러한 요건의 범위 내에서 입법자는 공영방송의 자금 조달 설계와 관련하여 형성의 여지를 갖는다.

본 사안에서는 인터넷이 가능하지만 지상파나 케이블 또는 위성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수신할 수 없는 기기를 통해 ORF 프로그램을 듣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을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방송헌법상 전제나 특히 평등의 원리와 같은 헌법상 보장에 합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방송연방헌법 제1조 제2항과 제3항의 형성의 요건에서는 전체 방송질서에서 공영방송의 민주적·문화적 의미가 중점이 된다. 현재 방송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수신료의 재정 조달, 즉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잠재적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수신료를 통한 자금 조달에서는 연방방송헌법상 방송을 잠재적으로 수신하고 방송을 통해 공개적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ORF의 법적 재정 조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의 사용자라고 해서 특정 집단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연방방송헌법 제1조 제2항에서 입법자에게 제시하는 방송규정의 형성에 대한 목표설정을 살펴보면, 이는 또한 방송 프로그램이 연방방송헌법 제1조 제1항의 헌법적 방송개념의 저널리즘적 구성요소를 충족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배포될 수 있다는 보장의무도 포함한다. ORF가 올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연방방송헌법의 목표설정을 고려할 때 통신 기술의 현황과 발전에 따라 ‘인터넷 방송’은 ‘방송’에 비견될 수 있다. 입법자가 ORF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을 행사하면서 프로그램수신료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연방방송헌법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방송질서에서 중요한 특정 사용행위를 재정 조달 의무로부터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입법자는 공영방송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균등한 참여기회에서 자금 조달 부담을 불균등하게 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ORF가 프로그램수신료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입법부는 인터넷을 통해 ORF 라디오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것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수신료 지불 의무를 보다 자세히 정의하고 차별화해야 한다. ORF의 프로그램에의 소통을 통한 참여를 온전히 제외시키는 것은 연방방송헌법의 독립성 요건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프로그램수신료로서 마련한 참여를 통한 재정 조달 체계의 요청에 합치되지 않는다.

방송국법 제31조 제10항의 규정이 동조 제17항과 제18항과 연계되어 ORF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에게 프로그램수신료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게 작용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연방방송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

확인된 위험 요소의 제거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수신료 납부 의무를 방송수수료법상 방송수수료 납부 의무와 결부시키는 방송국법의 조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연방방송국법 제31조 제10항의 ‘특히 방송참여자(방송수수료법 제2조 제1항)가 소재지에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상파(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지상파)를 통해 오스트리아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프로그램수신료 납부 의무의 시작과 종결 시점 및 면제에 관해서는 방송수수료에 적용되는 연방법 규정에 따른다.’라는 문언을 위헌으로 폐지한다.

V. 결정의 의의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ORF의 프로그램수신료 납부 체계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신기가 특정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집단을 수신료 납부 의무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